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07 발의연월일: 2020. 12. 8.

발 의 자:이원욱 · 김경만 · 김승원

김영주 · 김철민 · 민형배

박재호 • 신정훈 • 양정숙

윤영덕 · 윤후덕 · 이규민

이병훈 • 이용빈 • 주철현

홍성국 의원(16인)

제안이유

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충실하게 견제할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단일직렬로 임용해서 보직관리를 하기에,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지방의회 의원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.

이에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을 보다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·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직렬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 지방의회 직렬 공무원은 지방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발전에기여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좌·보조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지방의회직렬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·도에 지방의회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위원장은 시·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되도록 함(안 제7조제1항, 제9조제1항 및 제2항).
- 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직렬 공무원과 그 밖의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미리 구하도록 하고, 시·도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공무원 간의 인사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·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).
- 다. 시·도의회 및 시·군·구의회의 6급 이하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·도 단위별 또는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9조제5항제2호 및 제6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원욱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621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"두되,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"를 "둔다"로 하고,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제4항 본문 중 "제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위원회의"를 "각 인사위원회의"로 한다.

이 경우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지방의회에 근무하며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·보조하는 직무(이하 "지방의회직렬"이라 한다)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시·도에 별도의 인사위원회(이하 "제3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제1항 본문 중 "부구청장이"를 "부구청장 및 시·도의회의 사무처장이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,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말한다)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"를 "경우는다음 각 호에 따른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

다.

- 1.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다.
- 2.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10 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·부지사를 말한다)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
- 3. 제3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된다.

제10조제1항 중 "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"를 "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2.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전보·임용·징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청하 는 경우

제30조의2제2항 후단 중 "한다"를 "하며, 지방의회직렬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위하여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인사교류협의회의"를 "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며, 인사교류협의회의"로, "규칙으로"를 "조례·규칙으로"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지방의회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·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시·도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
제39조제4항 후단 중 "부구청장으로"를 "부구청장 또는 시·도의회의사무처장으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"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"를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"협의"를 "협의(지방의회직렬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)"로하며, 같은 조 제7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기술 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 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

- 2. 시·도의회 및 시·군·자치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의회 및 시·군·자치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
- 3. 시·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른 권역별로 실시한 지방의회직렬 5 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

제39조의2제2항 중 "기술직렬"을 "지방의회직렬·기술직렬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의회직렬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에 재직 중인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렬로 전환할 수 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7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지 제7조(인사위원회의 설치) ① ---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(임용권 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. 그 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 다)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. 특 우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 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 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 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고,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후 단 신설> 지방의회에 근무하며 지방의회 의 권한에 관한 사무를 보좌·보 조하는 직무(이하 "지방의회직 렬"이라 한다)를 수행하는 공무 원에 대해서는 시·도에 별도의 인사위원회(이하 "제3인사위원 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·③ (생 략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④ 제1항에 따라 시·도에 복수 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 1인사위원회의 위원과 제2인사 인사위원회의-----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없

다. 다만, 인사를 담당하는 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 의 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

⑤ ~ ① (생 략)

제9조(인사위원회의 기관)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·부위원장각 1명을 두며, 위원장은 시·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부시장·부지사·부교육감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부시장·부군수·<u>부구청장의</u> 의되고,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(互選)한다. 다만,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.

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 우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르고, 제2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 지사(「지방자치법」 제110조 제6항 후단에 따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시장·부지

 ⑤ ~ ⑪ (현행과 같음) 제9조(인사위원회의 기관) ①
 ② <u>경</u> <u>경</u> 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사를 말한다) 또는 인사를 담 당하는 국장이 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• ④ (생 략)

제10조(인사위원회의 회의) ① 인 제10조(인사위원회의 회의) ① --사위원회의 회의는 <u>위원장이</u> 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. <신 설>

<신 설>

- 1.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다.
- 2. 제2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·부지사(「지방자치 법」 제110조제6항 후단에 따 라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 는 부시장·부지사를 말한다) 또는 인사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.
- 3. 제3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·도의회의 사무처장이 된 다.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
-----다음 각 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-----

- 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
- 2.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 무원의 전보·임용·징계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관할 인사위원회의 위원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

② ~ ④ (생 략) 제30조의2(인사교류) ① (생 략)

② 시·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 단체 및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 단체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·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 류안을 작성하여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 류를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 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 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30조의2(인사교류) ① (현행과
같음)
②
하며, 지방의회직렬 공무
원의 인사교류를 위하여는 해당
지방의회 의장과 미리 협의하여
<u>야 한다</u> .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·도
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방의회
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
역의 지방의회 간에 인사교류
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「지
방자치법」 제104조의2제1항에
따른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인사
교류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·도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, 인사교류의 절차,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, 안전행정부령 또는 시·도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9조(승진임용의 방법) ① ~ 7 ③ (생 략)

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승 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 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 다. 이 경우 시·군·구의 부시 장·부군수·<u>부구청장으로</u> 승진임 용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사 전심의를 할 때에는 제9조제1 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위 원장의 직무는 위촉위원 중에 서 호선하는 사람이 수행한다.

⑤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

시사 및 시방사시단세의 상에
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<u>우 해당 시·도지사 및 지방자</u>
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.
<u>4</u>
제3항에 따
른 인사교류의 대상에 관하여는
조례로 정하며, 인사교류협의회
<u>의</u>
<u></u> 조례·규칙으로
제39조(승진임용의 방법) ① ~
③ (현행과 같음)
4
<u>부구청장 또는 시·도의회</u>
<u>의 사무처장으로</u>
5

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평 정, 경력평정,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 순위에 따라 직급 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 한다. 다만, 우수 인력의 확보 와 승진기회의 균형 유지를 위 하여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 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작성한 승 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 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<신 설>

	-
	_
	_
	_
<u>다음 각 호</u> 의]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	!
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	-
있다.	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시·도 및 시·군·구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작성한 승

<신 설>

- ⑥ 도지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의 생활권, 지리적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시장·군수와 협의하여 해당 도의 관할구역에서 권역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.
-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·도지사 및 교육감이 작성한다.

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하여 작성

2. 시·도의회 및 시·군·자치구의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해당시·도의회 및 시·군·자치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직렬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별로 작성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기초로 대통령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시·도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부를 통합하여 작성

	혀	기 (지 ㅂ	上이 히	지 건
	<u> H</u> ~	11/1/	5-1-1	<u> </u>
7 7 41 41	7) () 1	-111	-1 -11	احد الم
공무원의	경우는	해낫	- 지 방	-의회
0 1 6 1	0 1 6	11 0	1 0	1 - 1
시기기 기 중	를 신] /			
의장과 협	날의)			
101	-, ,,			
(7)				
\mathbf{U}				

1.·2. (생략) <신설>

- 제39조의2(승진시험의 방법) ① (생 략)
 - ② 일반승진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(제39조제5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시·도 및 시·군·구 소속 기술직렬 6급 이하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 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 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일반승 진시험의 경우에는 시·도 단위 또는 권역별로 작성된 승진후 보자 명부를 말한다. 이하 같 다)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 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또는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 하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 실시 하며, 시험성적 점수와 승진후 보자 명부에 의한 평정점수를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시·도 단위 또는 제6항에 따 른 권역별로 실시한 지방의회 직렬 5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승진후보자 명부

#39소의2(중신시역	김의 방법) (1)
(현행과 같음)		
2		-
		-
		-
	-지방의회직렬	•
<u>기술직렬</u>		-
		_
		-
		-
		-
		-
		-
		-
		-
		_
		-
		_
		_

합산한 종합성적으로 합격자를	
결정한다.	<u>.</u>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